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6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 박준태·조지연·고동진

구자근 · 김승수 · 조배숙

김장겸 · 강승규 · 송석준

안상훈 · 장동혁 · 곽규택

김상욱 · 이헌승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·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· 중등교육, 직업능력개발훈련,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·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·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9조(학교의	설치 • 운영)	(생	제29조(학교의 설치·운영) <u>①</u>
략)		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
			교육과정 개발・편성 등과 관
			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
			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